

## 농업인 소득증대 후속 대책

당정은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농가경영안정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8.15 경축사 농업부문 후속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확정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부)

### 1. 연대보증부담 및 연체채무 해소대책

#### 1) 정상상환중인 자금의 연대보증

농업용 자금 중 정상 상환중인 6조 4천8백억 원은 대환하면서 농신보(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무입보로 보증되며 이는 2000.1~6월 기간 중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절차를 거쳐서 처리된다.

이 경우 기존의 농신보 보증한도 1억 원과는 별도로 연대보증으로대출된 자금이 농신보 무입보 보증으로 대체되며 필요한 재원은 2000년 예산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이번조치로 연대보증을 해준 약 60만 농가가 연쇄보증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용자금의 연대보증해소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용자금 3천6백 억 원에 대해서는 99년 9월부터 지원되는 1조4천5백억 원 특별경영자금 중 일부를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는 회생가능한 농가의 연체해소자금으로 지원하

여 우선 연체상태해소 후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한다.

또 연체채무자가 스스로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협은 자체적으로 농협조합원인 연체채무자가 99년 말까지 원금만 상환하면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는 조치를 별도로 확정하고 시행중이다.

#### 3) 신규대출시 연대보증 해소

지난 7월 1일부터 보증인 없이 농신보 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종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바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뿐만 아니라 사료외상대금 등 상거래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하여 필요한 자금을 농업인들이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농신보 운영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는 1조4천5백억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포함하여 금년 말까지 대출될 정책자금을 농신보에서 보증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보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농신보 운영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지원키로 했다.

#### 4) 특별경영자금 1조4천5백억 원 지원

제2회 추경에서 확보된 농업특별경영자금 1조4천5백억 원은 농업생산목적 상호금융대출 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농가와 지난 수해 및 태풍의 영향으로 과수낙과 및 인삼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 농업생산목적 상호금융 대출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가격 하락·재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으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호당 5천만원까지 연리 6.5% 2년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이 자금은 99년 9월~12월사이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서 정밀경영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한다.

#### 2. 유통개선 농가소득증대

1)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일선 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자금 5천억원 조합당 30-50억원 지원

2) 농산물 수급안정에 농안기금 1조 1천억원 지원

3)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특별운영 자금 지원(농산물 수출업체 5% 저리 자금 3천5백억원 지원,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2백억원 별도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강화등)

#### 3. 신지식 농업인 발굴 육성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한 농업인들의 사례를 전파하여 농업인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보화교육과 농업분야 식지식 창출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특히 농업인이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농업인, 벤처형기업 등에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 4. 45조원 국민의 정부 농업 농촌 투융자 실천계획 확정

1) 재해대비 영농기반정비, 친환경 농림업의 육성 등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14조 9천6백억원(33%)

2) 농업인 교육 및 훈련, 농업경영 종합자금의 지원 등 건실한 농림경영체 육성: 7조 7천8백억원(17%)

3) 첨단 농림업기술개발, 농림업의 정보화 지원등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 1조8천1백억원(4%)

4) 산지 소비지 유통기반조성지원, 농림수산물 수출기반조성지원 등 농림산물유통개혁 및 수출농림업 육성: 8조7천1백억원

5)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등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지원: 8조1천3백억원(18%)

6)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지원, 농업 경영자금 이차보전등 농업인 경영안정: 3조6천6백억원(8%)